

제3085호
2024. 4. 17.

발행인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길성
편집인 : 홍보담당관 유진영
전화 : 3396-4955
(http://www.junggu.seoul.kr)

자치법규

선	기관 의 장
람	

구 보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24-445호 :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445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 개정에 따라 제1조(목적) 수정
-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신설에 따라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 수정

○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2.개별기준 위반행위에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사항 추가

▶ 과태료 : 1차위반 1,000, 2차위반 2,000, 3차위반 3,000 (단위만원)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5월 1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의약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다산로39길 16, 4층 의약과 의무팀), 전화 : 02-3396-6404, 팩스 : 02-3396-8910, 전자우편 : songjim1231@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	--	--	--	--	--	--	--	--	--	--	--	--	--	--	--	--	--	--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을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 중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을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1,000	2,000	3,000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 제1호	100	200	300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 제2호	100	200	300

현 행	개 정 안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p>	<p>제1조 (목적) -----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 -----.</p> <p>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p>																																									
<p>[별 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p> <p>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p> <p>2. 개별기준 (단위 : 만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위반행위</th> <th rowspan="2">근거 법조문</th> <th colspan="3">부과금액</th> </tr> <tr> <th>1차 위반</th> <th>2차 위반</th> <th>3차 이상 위반</th> </tr> </thead> <tbody> <tr> <td>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td> <td>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제1호</td> <td>100</td> <td>200</td> <td>300</td> </tr> <tr> <td>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 일명칭을 사용한 자</td> <td>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제2호</td> <td>100</td> <td>200</td> <td>300</td> </tr> </tbody> </table>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제1호	100	200	300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 일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제2호	100	200	300	<p>[별 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p> <p>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p> <p>2. 개별기준 (단위 : 만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위반행위</th> <th rowspan="2">근거 법조문</th> <th colspan="3">부과금액</th> </tr> <tr> <th>1차 위반</th> <th>2차 위반</th> <th>3차 이상 위반</th> </tr> </thead> <tbody> <tr> <td>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td> <td>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td> <td>1.00 0</td> <td>2.00 0</td> <td>3.00 0</td> </tr> <tr> <td>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td> <td>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 제1호</td> <td>100</td> <td>200</td> <td>300</td> </tr> <tr> <td>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 일명칭을 사용한 자</td> <td>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 제2호</td> <td>100</td> <td>200</td> <td>300</td> </tr> </tbody> </table>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1.00 0	2.00 0	3.00 0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 제1호	100	200	300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 일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 제2호	100	200	3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제1호	100	200	300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 일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제2호	100	200	3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1.00 0	2.00 0	3.00 0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 제1호	100	200	300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 일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 제2호	100	200	300																																						